

본 서식은 외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폭력 사건 경찰기관 신고 접수증 및 피해자 안전 계획서

신고 번호 :

신고 날짜, 시간 :

신고 기관, 부서 :

피해자 성명 :                      상대방 성명 :

발생 시간 :

발생 장소 :

### 상대방과 여전히 함께 거주 하는 경우

1. 나는 상대방과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찰 기관, 가정폭력예방센터, 법원 등으로 가서 협조를 요청하여,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신변안전을 보호한다.
2. 나는 반드시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당한 일들을 내가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에 알려 그들이 나의 정신적 기둥이자 긴급한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한다.
3.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과 미리 암호(예: 한 문장이나 어떤 음악, 또는 벨소리 울림 횟수 등)를 정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릴

것이다.

4. 폭력이 일어날 것 같다고 느껴지면 나는 최대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그로 하여금 내가 이미 양보하고 침착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또는 집안의 더 안전한 곳이나 식구들이 더 많이 있는 곳으로 가거나,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출구 쪽에 가까이 있다.
5. 나는 자녀에게 암호(예: 어떤 창의 커튼이 내려졌거나, 문 앞에 어떤 물건이 놓인 것을 본다면 등)를 알려주고, 이 암호를 보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즉시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게 할 것이다.
6. 나는 반드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와 병원의 위치를 **익혀둘 것이다**.
7. 나는 자녀가 경찰에 신고 및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이다. 구조 요청 전화를 걸 때는 반드시 집 전화번호, 집 주소 및 필요 사항을 정확히 밝힌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며, 상대방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 상대방을 떠나기로 이미 결정한 경우

8. 떠나기를 결정했다면 나는 "필수 물품"을 휴대할 것이다 : 신분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현금인출카드, 신용카드, 통장, 도장, 현금, 전화번호 연락처, 등본(戶口名簿), 휴대전화, 간단한 옷가지, 자녀 용품.
9. 나는 "필수 물품"을 집안의 안전한 곳에 둘 것이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물품들을 들고 떠날 수 있다.

10. 나는 "필수 물품"을 친척이나 친구 집에 두어 비상시를 대비할 수 있다.

## 상대방을 이미 떠나왔을 경우

11. 상대방과 꼭 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나는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메일 또는 제 3 자(예: 친구, 변호사 등)를 통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2. 나는 전화번호 변경 또는 자동응답기나 휴대전화 이용하기, 또는 가족, 동료, 건물 관리인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전화 또는 방문자를 필터링할 수 있다. 나에게는 괴롭힘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3. 출퇴근 시에 나는 시간이나 경로를 변경하거나, 때로 다른 교통 수단으로 바꾸어 이용하거나 또는 지인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14. 승하차 시에 나는 항상 차 안이나 주차장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15. 내가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거나 공공 장소에 있을 때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나는 상대에게 큰 소리로 제지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16. 기분이 심하게 가라앉거나 심지어 자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나는 113 보호 핫라인에 전화하거나 생명의 전화 같은 상담 단체를 찾아 이야기하거나,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지원 단체에 가입 할 수 있다.

## 보호령이 내려진 경우

## 【韓文版】

17. 보호령이 내려지면 나는 평소에 보호령(사본)을 소지하고 다니고, 필요에 따라 건물 관리인, 직장 경비, 자녀의 학교 교사, 친척 및 친구에게 보호령 사본을 출력해 줄 수 있다.
18. 상대방이 보호령을 위반(예: 폭력, 괴롭힘, 접촉, 추적, 전화 통화, 통신 또는 기타 불필요한 연락 행위, 거주지로부터 이사해 가지 않음, 거주지나 직장, 학교 또는 기타 특정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음 등)할 경우, 나는 즉시 110으로 전화해 신고할 것이다. 만약 보호령 사본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보호령이 이미 발효되었음을 즉시 경찰에 알리고 경찰이 이를 확인하도록 상기시킬 수 있다.
19. 만약 보호령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여전히 가정폭력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 나는 보호령 기간 만료 이전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해 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20. 나는 경찰을 통해 보호령 청구의 목적은 나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에 대한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가해자에게는 형실불량 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보호령을 위반하여 일단 경찰에 신고된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이송 또는 송치되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최대 NT\$ 100,000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된다.

### 비상 전화번호(휴대하거나 기억하기)

21. 긴급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즉시 신고 핫라인 110으로 전화하십시오.

【韓文版】

22. 가정폭력 관련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면 다음의 보호 핫라인, 가정폭력예방센터, 각 경찰서, 파출소로 전화하십시오.

보호 핫라인	가정폭력예방센터	파출소	경찰서(가정폭력예방관)
113			

23. 필요시 다음 사람들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성명을 적은 경우 반드시 전화번호를 함께 적으십시오).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성명				
전화번호				

○○○ 경찰서는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